

■ EU, 오존파괴물질에 관한 새로운 규제 시행(EB 3호, 6/23/00 참조)

- 오존파괴물질의 생산과 사용을 금지하는 새로운 규제가 9월말에 제정되어 EU에서 시행됨
 - 국제협약인 UN 몬트리올 의정서에 따라 기존에 시행되던 규제를 보다 강화해 적용하기 위해 관련 법을 세 가지 제정함
 - 규제안은 2년 전에 유럽집행위원회가 처음으로 제안하였던 것이나 여러 이견들이 제기됨으로서 합의안 마련이 지연되었었음
- 규제안은 세 개로 나뉘는데 하나는 기존 규제안을 강화하는 내용이고 나머지 두 가지는 생산량 조정 내용과 추가금지 분야를 규정하고 있음
 - 첫 번째 법안은 CFCs 대체화합물, 수소염화불화탄소(HCFCs), 농약인 메틸 브로마이드 등에 대해 논쟁의 여지가 많았던 사용 금지 기한을 포함해 강도 높은 제한을 하고 있음
 - 대부분의 CFCs, 사염화탄소, TCE (1,1,1-Trichloroethane)의 사용과 생산을 즉시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
 - 다른 두 법안은 업체별로 HCFCs의 생산 기준년도 변경과 수입 할당량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음
 - 또한 그간 제한을 받지 않았던 유일한 의료장비와 의료용 공기여과기에 대해서도 CFCs 사용을 금지하는 개정 내용이 포함됨
- 수소염화불화탄소에 대한 규제일정이 앞당겨짐으로서 EU 권역으로 수출하는 제품에 대한 회피전략이 필요함
 - 기존에 2029년 12월 31일까지 전면 금지하기로 했던 수소염화불화탄소에 대한 규제 일정이 2009년 12월 31일까지로 앞당겨짐
 - EU 권역 내에서의 생산이나 사용금지뿐만 아니라 수입까지 금지하고 있어 수소염화불화탄소를 사용하는 냉장, 냉동, 에어컨 등이 1차적인 영향을 받을 것임
 - 또한 제조 과정에서의 환경성을 강조하는 추세에 따라 생산 과정에서 이들 오존파괴물질을 사용하는 제조업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됨
 - 따라서 환경성이 뛰어난 대체물질로의 전환을 고려해야 함

기 준 학(02-3669-4097, hiemjhki@shinbiro.com)